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 
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

임 채 오



2022년 1월 13일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훈령 제29호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 
일부개정규정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  
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회의규칙에 의한”을 “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」에 따  
른”으로, “회의록(이하 “회의록” 이라 한다)의 작성, 발간, 배부, 보존, 열  
람, 복사”를 “회의록의 작성·발간·배부·보존·열람·복사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회의록은 회의체”를 “회의록(이하 “회의  
록”이라 한다)은 회의”로, “구분 한다”를 “구분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  
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본회의 회의록

## 2. 위원회 회의록

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며,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제2조제2항제1호 중 “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서명, 날인하여 영구보존하는”을 “제51조제1항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영구보존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배부회의록 :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의원에게 배부하고, 주민에게 공개하는 회의록
4. 비공개회의록 :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회의 내용을 게재한 회의록
5. 전자회의록 : 회의내용을 전자화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USB 등 전자적 형태의 저장매체로 제작·배부하는 회의록
6. 참고문서 : 의원이 그 발언의 참고를 위하여 회의록에 게재하는 간단한 문서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회의규칙 제67조 제1항 각호”를 “회의규칙 제67조제1항 각 호”로, “행정사무조사회의록”을 “행정사무조사 회의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회의규칙 제53조 제1항 단서의 규정”을 “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사항중”을 “사항 중”으로, “아니한 각종 보고서·참고자료등”을 “아닌 각

중 보고서·참고자료 등”으로 한다.

① 본회의 회의록은 회의규칙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.

제4조의 제목“(보존회의록의 작성·보존 및 열람등)”을“(보존회의록의 작성·보존 및 열람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단서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단서에 따라”로, “아니하기”를 “않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영구 보존한다”를 “영구보존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(의장”을 “(의장은”으로, “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”를 “제2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”로, “이하같다”를 “이하 같다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비공개회의록은 원고로서 보존하되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영구보존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제출”을 “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 또는 위원장은 심사·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”으로 한다.

제6조 본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완결짓는 간명한”을 “완결 짓는 간단하고 명료한”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“(참고문서등의 게재)”를“(참고문서 등의 게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의원의”를 “의원이”로, “제14호의 규정에

의하여”를 “제14호에 따라”로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기타 발언자(이하“발언자”라 한다)가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구의 정정을 하고자”를 “그 밖의 발언자(이하 “발언자”라 한다)가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자구를 정정하고자”로, “별지 제 5호서식에 의한”을 “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항에 따른 정정요구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.

제8조제2항제2호 중 “선후문구”를 “앞뒤 문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토씨”를 “조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5조 제2항의 규정을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”을 “제5조제2항의 규정을, 회의규칙 제53조제1항”으로, “제4조 제3항”을 “제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때”를 “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녹음테이프는 1년간 보존”을 “녹음기록매체는 1년간 보존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한한다”를 “한정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폐지된 위원회 회의록열람 등)”을 “(폐지된 위원회 회의록 열람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조례등의 개폐”를 “조례 등의 개정 또는 폐지”로, “존속기간이 만료된”을 “존속기간이 만료된”으로, “당대의”를 “현재 활동 중인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“열람.복사”를 “열람·복사”로 하고, 본문 내용 중 “보존회의록중”을 “보존회의록 중”으로,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, “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53조에 따라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의 본문 내용 중 “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53조에 따라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의 본문 내용 중 “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7조제2항에 따라”로 하며, 본문 하단의 “2000”을 “20 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“참고문서.발언보충서”를 “참고문서·발언보충서”로 하며 본문 내용 중 “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37조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의 본문 내용 중 “회의록중”을 “회의록 중”으로 하며, “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52조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의 본문 내용 중 “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9조에 따라”로 하며, 본문 표 내용 중 “신 청 냉 용”을 “신 청 내 용”으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의 본문 내용 중 “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 와”를 “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<u>회의규칙에 의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록</u> (이하 “<u>회의록</u>” 이라 한다)의 작성, 발간, 배부, 보존, 열람,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회의록의 종류 및 정의) ① <u>회의록은 회의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.</u></p> <p>1. <u>본회의회의록</u>                  2. <u>위원회회의록</u>                  3. 4. (생략)</p> <p>② <u>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각각 특성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며,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u></p> <p>1. <u>보존회의록</u> : 「<u>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</u>」 (이하 “<u>회의 규칙</u>”이라 한다) <u>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서명, 날인하여 영구보존하는 회의록</u></p> <p>2. <u>배부회의록</u> : <u>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, 일반에게 반포하는 회의록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</u>」에 따른 ----- <u>회의록의 작성·발간·배부·보존·열람·복사</u> -----.</p> <p>제2조(회의록의 종류 및 정의) ① <u>회의록(이하 “<u>회의록</u>”이라 한다)은 회의-----</u>                  - <u>구분한다.</u></p> <p>1. <u>본회의 회의록</u>                  2. <u>위원회 회의록</u>                  3.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며,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u></p> <p>1.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<u>제51조제1항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영구보존하는 -----</u></p> <p>2. <u>배부회의록</u> : <u>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라 의원에게 배부하고, 주민에게 공개하는 회의록</u></p>

3. (생략)

4. 비공개회의록 :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내용을 게재한 회의록

<신설>

<신설>

제3조(회의록의 작성) ① 본회의 회의록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.

② 위원회 회의록은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,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및 행정사무조사회의록은 이를 준용하여 기재한다.

③ 제2항의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록 원고가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록 발간 전에 이를 검토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회의

3. (현행과 같음)

4. 비공개회의록 :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회의 내용을 게재한 회의록

5. 전자회의록 : 회의내용을 전자화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USB 등 전자적 형태의 저장매체로 제작·배부하는 회의록

6. 참고문서 : 의원이 그 발언의 참고를 위하여 회의록에 게재하는 간단한 문서

제3조(회의록의 작성) ① 본회의 회의록은 회의규칙 제5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.

② ----- 회의규칙 제67조제1항 각호-----  
----- 행정사무조사 회의록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-----  
-----  
-----.

④ -----

록에 기재하는 사항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각종 보고서·참고자료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.

제4조(보존회의록의 작성·보존 및 열람등) ①보존회의록은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 내용을 게재한다.

②보존회의록은 영구 보존한다.

③의원이 보존회의록의 열람·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(의장 제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고, 위원장은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해당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비공개회의록의 보존·열람)

① 비공개회의록은 원고로서 보존하되 회의규칙 제51조제1항 또는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·날인을 받아 영구 보존한다. 다만,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인쇄하여 보존할 수 있다.

②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

----- 사항 중 -----

----- 않은 각종 보고서·참고자료 등-----

-----.

제4조(보존회의록의 작성·보존 및 열람 등) ① -----

----- 단서에 따라 ----- 않기-----

-----.

② ----- 영구보존한다.

③ -----  
----- 따른 -----

-----(의장은 -----  
----- 제2

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-----  
----- 이하 같다-----

-----.

제5조(비공개회의록의 보존·열람)

① 비공개회의록은 원고로서 보존하되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영구 보존한다. -----

-----.

② -----

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)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을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발언내용을 완결짓는 간명한 것이어야 한다.

제7조(참고문서등의 게재) 의원의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제8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고문서 또는 발언보충서를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의내용 또는 발언에 관계되는 간단한 사항이어야 한다.

제8조(자구의 정정) ① 발언한 의원 및 출석공무원, 기타 발언자(이하 “발언자”라 한다)가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구의 정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요구서를 의장 또

-----  
따른 -----  
---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 또는 위원장은 심사·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---

제6조(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따른 -----  
-----  
----- 완결 짓는 간단하고 명료한 ---.

제7조(참고문서 등의 게재) 의원이 ----- 제14호에 따라 -----  
----- 따  
른 -----  
-----  
-----.

제8조(자구의 정정) ① -----  
----- 그 밖의 발언자(이하 “발언자”라 한다)가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자구를 정정하고자 -----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-----

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한다.

1. (생략)
2.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하는 경우
3. 토씨를 정정하는 경우
4. (생략)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가 임시회의록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배부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하고, 배부회의록이 발간된 후의 경우에는 다음 회의록에 정오표를 게재하거나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.

제9조(회의록 원고의 열람·복사)

① 의원 또는 발언자가 발간 전의 회의록 원고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의원이 비공개회의록 원고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원고를 열람·복사하고자 할

-----.

② 제1항에 따른 정정요구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 앞뒤 문구-----
3. 조사-----
4.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에 따른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9조(회의록 원고의 열람·복사)

① -----  
-----  
----- 따  
른 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 제5조제2항의  
규정을,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--  
-----  
-----

때에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.

제10조(녹음) ①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업무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녹음을 할 수 있다.

② 본회의(위원회를 포함한다)의 녹음테이프는 1년간 보존하고 의회에서 장기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2년마다 재복사하여 보존한다. 다만, 녹음의 재복사는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 녹음에 한한다.

③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의 녹음복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발언자의 발언내용을 녹음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11조(폐지된 위원회 회의록 열람 등) 조례 등의 개폐로 폐지된 위원회와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별위원회 및 당대의 의회 이전의 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열람·복사허가 등은 의장이 행한다.

- 제4조 제3항-----  
-----.

제10조(녹음) ① -----  
----- 경  
우-----.

② ----- 녹  
음기록매체는 1년간 보존-----  
-----  
-----.  
-----  
한정한다.

③ -----  
-----  
----- 다른 -----  
-----.  
-----.

제11조(폐지된 위원회 회의록 열람 등) 조례 등의 개정 또는 폐지--  
존속기간이 만료된 -----  
-- 현재 활동 중인 -----  
-----  
-----.



【별지 제3호서식】

### 회의록 게재 신청서

귀하

제 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 호 본회의(위원회) 회의록에 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0 년 월 일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(인)

【별지 제3호서식】

### 회의록 게재 신청서

귀하

제 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 호 본회의(위원회) 회의록에 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37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(인)

【별지 제4호서식】

### 참고문서.발언보충서 게재신청서

귀하

제 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 호 본회의(위원회) 회의록에 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참고문서·발언보충서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(인)

【별지 제4호서식】

### 참고문서·발언보충서 게재신청서

귀하

제 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 호 본회의(위원회) 회의록에 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37조제2항에 따라 참고문서·발언보충서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(인)

【별지 제5호서식】

자 구 정 정 요 구 서

귀하

제 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 호 본회의(위원회) 회의록 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구정정을 요구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정 정 사 항

면	단	행	오	정

20 년 월 일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(인)

【별지 제5호서식】

자 구 정 정 요 구 서

귀하

제 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 호 본회의(위원회) 회의록 중 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5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구정정을 요구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정 정 사 항

면	단	행	오	정

20 년 월 일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(인)

【별지 제6호서식】

회의록 원고 열람·복사 신청서

귀하

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회의록의 원고를 열람·복사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 청 사 항

회의명	차 수	회의일	신 청 내 용	비 고
		20 . . .		

20 년 월 일

신 청 인 (인)

【별지 제6호서식】

회의록 원고 열람·복사 신청서

귀하

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에 따라 아래 회의록의 원고를 열람·복사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 청 사 항

회의명	차 수	회의일	신 청 내 용	비 고
		20 . . .		

20 년 월 일

신 청 인 (인)



## 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### 1. 개정이유

- 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」 개정(2022. 1. 13. 시행)에 따른 수정필요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 법제처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전자회의록 및 참고문서의 정의 추가(안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)
- 근거조항과 일치하도록 내용 수정(안 제5조)
- 녹음테이프의 재복사 및 보존에 관한 조항 삭제(안 제10조제2항)
- 기타 조문 정비